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5 선고 2019가단4799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별지 2 '피고 목록' 기재와 같다.

피고(선정당사자) C

변론 종결2020. 8. 18.

판결 선고2020. 9. 15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D, E 주식회사, F, G, H, I은 연대하여 3,176,158,050원 및 그 중 719,815,985원에 대하여,

나.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K, L, M, N, O, P, Q, R은 위 가항의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352,906,450원 및 그 중 각 79,979,553원에 대하여,

각 2009. 9. 4.부터 2010. 2. 11.까지는 연 1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, E 주식회사, F, G, H,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(선정당사자)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/3은 원고가, 나머지는

피고(선정당사자)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, E 주식회사(이하 'E'이라 한다), F, G, H, I은 연대하여 3,176,158,050원 및 그 중 719,815,985원에 대하여,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K, L, M, N, O, P, Q, R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352,906,450원 및 그 중 각 79,979,554원에 대하여, 각 2009. 9. 4.부터 2010. 2. 11.까지는 연 1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D은 S 주식회사(이하 '피보험자'라 한다)와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그에 따른 리스로 지급보증의 담보로 원고[합병전 상호: T 주식회사]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U	(주)D	S(주)	₩122,000,000-\$926,000-	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부터 5년
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나.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인 피고 D이 리스로 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, 원고가

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D은 원고에게 즉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 E, F, G, H, I 및 망 J는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D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라.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 D은 리스로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였고, 원고는 1994. 7. 1.

피보험자에게 872,708,200원을 지급하였다.

마.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E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. 3. 23. 별지 4 기재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 385095호).

바. 망 J는 2011. 9. 7. 사망하였고,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 V, 자녀 W, X, Y, Z, AA, AB가 있으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(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2998호 참조), 2순위 상속인인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별지 3 상속인 내역 기재와 같이 각 1/9지분씩 상속하였다.

[인정 근거]

0. 피고 D, E, G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0. 피고 F, H, I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0.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들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에게, 피고 D, E, F, G, H, I은 연대하여 3,176,158,050원 및 그 중 719,815,985원에 대하여,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K, L, M, N, O, P, Q, R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 중 각 352,906,450원(= 3,176,158,050원 x 1/9) 및 그 중 각 79,979,553원(= 719,815,985원 x 1/9, 원미만 버림)에 대하여 각 2009. 9. 4.부터 2010. 2. 11.까지는 연 1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(선정당사자)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(선정당사자)의 주장

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망 J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
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책임은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.

나. 이 법원의 판단

을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신고한 망 J의 상속채무와 관련된 상속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2020. 8. 19. 대구가정법원에서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D, E, F, G, H,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
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
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명재권

별지